

2019년도 제291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회의록

I. 회의 개요

- 일 시 : 2019. 12. 17.(화요일), 10:30
- 장 소 : 한국저작권보호원 회의실
- 참 석 자 :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제2분과위원회 위원 3명 참석
 - 심의위원 : 최승수(분과위원장), 박성호, 박재화 위원
- 회의 진행순서 및 안건

1. 개회선언 및 인사말씀 분과위원장

2. 전차(제2019-283회)회의록 확인 및 공개여부 결정 분과위원

3. 안건상정 분과위원장

<의결안건> ※ 안건 검토 보고 :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성원영 전문위원

- 제1호 :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경고, 삭제 또는 전송중단

시정권고 심의

4. 폐회선언 분과위원장

II. 회의내용 및 결과

1. 의결안건

○ 제1호: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경고, 삭제 또는 전송중단 시정권고 심의
- 주요내용: 온라인상의 불법복제물등에 대한 삭제 또는 전송중단과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 4,043건(안건번호 제2019-164271호~166408호)

- 회의결과: 안건번호 제2019-164271호~164284호는 연예인 사진을 이용하여 의류 판매 사이트를 홍보한 사안으로, 심의대상 게시물은 시정권고 제도의 본래 목적인 온라인상 불법복제물 확산의 조기 차단과 거리가 있어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불법복제물등에 대한 삭제 또는 전송중단과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를 부결함.

안건번호 제2019-164285호~164286호는 영화 스틸컷을 이용하여 출판물을 소개한 사안으로, 심의대상 게시물이 해당 영화 저작물의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보기 어려워 불법복제물등에 대한 삭제 또는 전송중단과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를 부결함.

안건번호 제2019-166107호~166113호는 카페에서 소설 등의 복제물을 제공한 사안으로, 심의대상 게시물이 해당 출판저작물의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작다고 보기 어려워 불법복제물등의 삭제 또는 전송중단과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를 가결함.

안건번호 제2019-165732호~165745호는 자막공유 사이트에서 우리말로 무단 번역한 자막파일을 제공한 사안임. 심의대상 게시물이 저작권 제한사유에 해당할 가능성은 낮으나, 심의대상 게시물들이 이미 삭제 또는 전송중단 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를 가결함.

그 외에 불법복제물등에 해당되는 심의안건 게시물 4,005건은 삭제 또는 전송중단의 시정을 권고하고 복제·전송자에 대하여는 경고의 시정을 권고하되,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으로 의결함.

Ⅲ. 회의 의사록

1. 개회선언

- 최승수 분과위원장 :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9년 제291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개회를 선언함.

2. 전차(제2019-283회)회의록 확인 및 공개여부 결정

- 최승수 분과위원장 : 전차 회의록 공개여부에 관해 의견을 구함.
- 성원영 전문위원 : 회의록 5쪽 사이트명이 노출된 부분의 공개 여부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람.
- A 위원 : 해당 정보는 비식별 처리한 후 회의록을 공개하는 것이 바람직함.
- B 위원 : 의견에 동의하며, 회의록에 이상이 없음을 확인함.
- C 위원 : 해당 사이트명은 비식별 처리함이 타당함.

- 성원영 전문위원 : 복제·전송자에 관한 정보 제공 청구 심의 회의록의 공개 여부에 관하여 위원들에게 의견을 구함.
- A 위원 : 복제·전송자에 관한 정보 제공 청구 심의 회의록은 비공개로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함.
- C 위원 : 위원님의 의견에 동의함.
- B 위원 : 의견에 동의함.
- 최승수 분과위원장 : 만장일치로 전차 회의록에 대한 이상 없음을 확인하였고, 시정권고 심의 회의 부분에서 사이트명은 비공개로 하고 정보제공청구 심의 회의 부분은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회의공개 등에 관한 규정」 제7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비공개하기로 결정함.

3. 안건상정

- o 제1호 :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경고, 삭제 또는 전송중단 시정권고 심의
 - 성원영 전문위원 : 금일 심의대상은 안건번호 제2019-164271호~166408호로 심의대상 게시물은 모두 4,043건임.
 관련 법령과 심의 기준은 검토보고서 보고로 같음하겠음.
 안건번호 제2019-164271호~164284호는 민원인이 신고한 건으로, 패션홍보대행사가 연예인 사진을 이용하여 네이버 블로그에서 의류, 신발, 액세서리 등을 판매하는 사이트를 홍보한 사안임.
 (보호원이 제출한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안건번호 제2019-164271

호~164274호는 뉴스기사에서 가져온 연예인 사진을 이용하여 해당 연예인이 착용한 의류 등 제품을 판매하는 온라인사이트를 홍보하는 게시물을 작성한 사안임.

(안전번호 제2019-164271호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심의대상 게시물이 존재하는 블로그는 연예인의 공항패션 사진을 제공하고 있음. 해당 사진은 포토라인, 카메라의 각도, 피사체의 포즈를 고려하였을 때 통상적인 파파라치 사진과는 다르다고 볼 수 있음. 게시자는 해당 사진의 출처를 명시하였고, 블로그 하단에는 해당 사진 속 연예인이 착용한 의류를 구매할 수 있는 사이트를 링크하였음.

(안전번호 제2019-164272호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심의대상 게시물이 존재하는 블로그는 콘서트에서 연예인을 촬영한 사진을 제공하고 있음. 게시자는 해당 사진의 출처를 명시하였고, 블로그 하단에는 해당 사진 속 연예인이 착용한 의류를 구매할 수 있는 사이트를 링크하였음.

(안전번호 제2019-164273호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심의대상 게시물이 존재하는 블로그는 연예인의 공항패션 사진, 연예인이 착용한 신발을 스크린샷 한 예능프로그램 사진을 제공하고 있음. 게시자는 해당 사진의 출처를 명시하였고, 블로그 하단에는 해당 사진 속 연예인들이 착용한 신발들을 구매할 수 있는 사이트를 링크하였음.

(안전번호 제2019-164274호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심의대상 게시물이 존재하는 블로그는 연예인의 공항패션 사진을 제공하고 있음. 게시자는 해당 사진의 출처를 명시하였고, 블로그 하단에는 해당 사진 속 연예인이 착용한 신발을 구매할 수 있는 사이트를 링크하였음.

심의대상 게시물 속 연예인 사진은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받는 저작물에 해당할 가능성이 상당함. 해당 사진을 이용한 목적 및 성격을 고려했을 때 공정이용 등 저작재산권 제한사유에 해당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려움.

저작권침해가 성립하는 사안에서 시정권고의 필요성 내지 타당성이

당연히 인정되는 것은 아님.

(보호원이 제출한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안건번호 제2019-164275호~164284호는 드라마, 예능프로그램에서 연예인이 의류, 신발 등을 착용하고 있는 장면을 스크린샷하여 착용 제품을 판매하는 온라인사이트를 홍보하는 게시물을 작성한 사안임.

(안건번호 제2019-164275호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심의대상 게시물이 존재하는 블로그는 드라마에서 연예인이 착용한 신발을 스크린샷한 다수의 사진을 제공하고 있음. 게시자는 해당 사진의 출처를 명시하였고, 블로그 하단에는 해당 사진 속 연예인이 착용한 신발을 구매할 수 있는 사이트를 링크하였음.

심의대상 게시물은 제품 판매, 홍보를 목적으로 저작물의 일부를 이용하고 있는바, 인용, 공정이용 등 저작권법 제17조 제1항에 해당할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임.

- B 위원 : 심의위원회에서 연예인 사진을 이용한 의류 등 홍보 게시물과 같은 사안에 대해 처음 심의하는 것인지?
- 성원영 전문위원 : 그렇게 알고 있음.
- B 위원 : 연예인의 공방패션 사진은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물에 해당될 수 있다고 생각함.
- C 위원 : 위원님의 의견에 동의함. 다만, 해당 사안은 시정권고 제도의 본래 취지에는 부합하지 않는다고 생각함.
- 최승수 분과위원장 : 전문위원의 안건 설명을 바탕으로 위원들에게 안건번호 제2019-164271호~164284호에 대한 의견을 구함.

- A 위원 : 해당 사안은 사인 간 분쟁으로 보여 심의위원회가 관여할 사안은 아닌 것으로 보임. 또한 심의대상 게시물은 시정권고 제도의 본래 목적인 온라인상 불법복제물 확산의 조기 차단과 거리가 있어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부결 의견임.
- C 위원 : 시정권고 제도의 본래 취지는 온라인에서 불법복제물의 확산을 조기에 차단하기 위함인데 심의대상 게시물은 불법복제물 이용, 확산과 거리가 있어 보이는 점, 심의대상 게시물은 연예인이 착용한 의류 등을 판매, 홍보하기 위한 것으로 사진 그 자체를 이용 대상으로 한 것은 아닌 점 등을 고려하면 안전번호 제2019-164271호~164284호는 시정권고의 대상으로 삼기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됨.
- B 위원 : 위원님의 의견에 동의함.
- 최승수 분과위원장 : 만장일치로 안전번호 제2019-164271호~164284호는 게시물에 대해 삭제 또는 전송중단과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를 부결함.
- 성원영 전문위원 : 안전번호 제2019-164285호~164286호는 국민신문고 민원을 기초로 보호원이 조사를 하여 심의를 요청한 건임. 민원인은 출판사와 마케팅 홍보 기업이 타인의 저작권이나 권리 등을 침해하여 악질적인 수법으로 해당 출판사가 출판한 책을 광고하고 있다고 주장함.
(보호원이 제출한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안전번호 제2019-164285호 블로그는 마케팅 홍보 기업의 출판사 홍보용으로 보임. 심의대상 게시물은 해당 출판사의 출판물 ‘◆◆◆◆ ◆◆◆◆ ◆◆ ◆◆ ◆◆’를 홍보하고 있음. 게시자는 2019. 4. 25. “◆◆◆◆ ◆◆ ◆◆◆◆ ◆◆◆◆ ◆◆◆◆◆◆◆◆◆◆◆◆”는 제목으로 글을 작성하면서 워런 버핏

사진, 영화 '빅쇼트'의 스틸 컷 등을 이용하였음. 게시자는 해당 사진들의 출처를 명시하지 않음. 해당 스틸 컷은 포털사이트 영화 정보 게시판에서 제공하고 있음.

(보호원이 제출한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안건번호 제2019-164286호 게시물은 해당 출판사의 출판물 '◆◆◆◆◆◆◆◆◆◆'를 홍보하고 있음. 게시자는 2018. 9. 13. "◆◆◆◆◆◆◆◆◆◆"는 제목으로 글을 작성하면서 영화 '죽은 시인의 사회'의 스틸 컷 등을 이용하였음. 해당 스틸 컷은 포털사이트 영화 정보 게시판에서 제공하고 있음.

- B 위원 : 영화 정보 게시판에서 영화 스틸 컷들을 제공하고 있다고 보고하였는데 영화 제작자로부터 포털사이트가 권리를 가져갔다는 의미인지?
- 성원영 전문위원 : 보호원이 영화 제작자와 포털사이트 사이의 영화 스틸 컷에 대한 권리관계는 확인하지 못하였음.
다만, 영화 스틸 컷은 포털사이트에서 영화를 검색하면 영화 정보 게시판에서 이용할 수 있음.
- B 위원 : 인터넷 영화 데이터베이스(IMDB)에서도 영화 스틸 컷을 제공하는지?
- 성원영 전문위원 : (인터넷 영화 데이터베이스(IMDB)에서 영화 '빅쇼트'를 검색하면서)인터넷 영화 데이터베이스(IMDB)도 Photos 목록에서 해당 영화 스틸 컷을 제공하고 있으며, 다운로드도 가능함.
- 최승수 분과위원장 : 전문위원의 안건 설명을 바탕으로 위원들에게 안건번호 제2019-164285호~164286호에 대한 의견을 구함.

- A 위원 : 안전번호 제2019-164285호, 164286호는 출판물 홍보를 위해 서평을 작성하면서 영화 스틸컷을 이용한 사안으로, 심의대상 게시물이 해당 영화 저작물의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보기 어려워 부결함이 타당해 보임.
- B 위원 : 심의대상 게시물에서 이용하고 있는 영화 스틸 컷은 포털 사이트 영화 정보 게시판에서 무료로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해당 영화 저작물의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심의대상 게시물은 출판물을 홍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보이나 게시자가 작성한 서평이 주된 부분을 이루고 있어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심의대상 게시물은 시정권고의 대상으로 삼기에 부적합하다고 생각함.
- C 위원 : 이견 없이 동의함.
- 최승수 분과위원장 : 만장일치로 안전번호 제2019-164285호~164286호는 게시물에 대해 삭제 또는 전송중단과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를 부결함.
- 성원영 전문위원 : 안전번호 제2019-166107호~166113호는 국민신문고 민원을 기초로 보호원이 조사를 하여 심의를 요청한 건임.
(보호원이 제출한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안전번호 제2019-166107호, 166108호는 다음 카페 회원이 '달빛조각사(출판:인타임,카카오페이지,시리즈)' 1권~5권, 1권~46권을 각각 5개, 46개 txt파일로 무단 게시한 사안임(총 2개 게시물). 안전번호 제2019-166107호 심의대상 게시물 게시 일자는 2017. 3. 15.이고, 카페 회원 수는 42,780명(2019. 12. 13. 기준)임.
(보호원이 제출한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안전번호 제2019-166109~166110

호는 다음 카페 회원이 복수의 어문저작물을 무단 게시한 사안임(총 2개 게시물).

(보호원이 제출한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안건번호 제2019-166111호~166113호는 다음 카페 회원이 해외 클라우드 서비스인 'Mega'에 저장된 다수의 어문저작물로 연결되는 직접링크(direct link)를 설정한 사안임(총 3개 게시물).

한편 클라우드 서비스의 경우 일반적인 사이트에 올려놓은 게시물과 달리 쉽게 그 주소를 알 수는 없을 뿐 아니라 금번 링크 게시물이 저장된 클라우드 서비스 'Mega'는 설정된 암호를 아는 사람만 접근 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므로, 'Mega'에 저작물을 저장한 사람과 심의대상 링크 게시물을 올린 사람이 동일인일 가능성이 있음.

- 최승수 분과위원장 : 전문위원의 안건 설명을 바탕으로 위원들에게 안건번호 제2019-166107호~166113호에 대한 의견을 구함.
- C 위원 : 안건번호 제2019-166107호~166110호 심의대상 게시물은 어문저작물의 불법복제물을 무단으로 제공하고 있어 권리자의 복제·전송권을 침해하고 있으며, 합법 시장이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되어 그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작다고 보기도 어려움. 안건번호 제2019-166111호~166113호 심의대상 게시물은 이용자들이 링크를 통해 다수의 출판물을 무료로 다운로드할 수 있으므로, 심의대상 게시물이 해당 출판저작물의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작다고 보기 어려움.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해 안건번호 제2019-166107호~166113호 심의대상 게시물에 대하여 시정조치를 권고할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생각함.
- A 위원 : 심의대상 게시물이 출판저작물의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작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가결 의견임.

- B 위원 : 위원님의 의견에 동의함.
- 최승수 분과위원장 : 만장일치로 안전번호 제2019-166107호~166113호는 게시물에 대해 삭제 또는 전송중단과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을 권고하는 것으로 가결함.
- 성원영 전문위원 : (보호원이 제출한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안전번호 제2019-165732호~165745호는 민원인이 신고하여 보호원이 심의를 요청한 사안임. 자막공유사이트의 이용자가 민원인이 권리를 가지고 있는 해외영화의 자막 파일을 무단 전송한 15개 게시물임. 해외 영화의 대사를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우리말로 번역함. 무단 번역한 자막도 2차적저작물로서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이 될 수 있는 점, 심의위원회 심의가 대심제가 아닌 관계로 자막파일 게시자의 의견을 청취하는데 한계가 있는 점, 심의대상 게시물이 이미 삭제 또는 전송중단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본 건에서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이 타당함.
- 최승수 분과위원장 : 전문위원의 안전 설명을 바탕으로 위원들에게 안전번호 제2019-165732호~165745호에 대한 의견을 구함.
- B 위원 : 해당 안전의 무단 번역한 자막도 2차적저작물로서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이 될 수 있는 점, 심의대상 게시물은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함.
- C 위원 : 안전번호 제2019-165732호~165745호는 공정이용 등 저작권 제한사유에 해당할 가능성은 낮아 보이지만, 심의대상 게시물들이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복제·전송

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함.

- A 위원 :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이 타당함.
- 최승수 분과위원장 : 만장일치로 안전번호 제2019-165732호~165745호는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을 권고하는 것으로 가결함.
- 성원영 전문위원 : (불법복제물 제공화면, 파일 다운로드 화면, 불법복제물 재생화면을 제시하면서)안전번호 제2019-164287호~165731호, 제2019-165746호~166106호, 제2019-166114호~166408호는 웹하드 등 사이트를 통해서 단순 불법복제물이 공중의 이용에 제공된 사안임.
(영화 ‘크롤 (2019)’ 관련 자료를 제시하면서)안전번호 제2019-164432호는 2019. 11. 27. 개봉한 미국 영화를 밴드에서 제공한 사안임. 해당 영화는 현재 상영 중(2019. 12. 16. 기준)임. 해당 밴드는 하나의 게시물에서 해당 영화를 포함한 3개의 영상저작물을 mp4, mkv 파일로 제공하고 있음. 해당 밴드 소개에는 “누구나 밴드를 검색해 찾을 수 있고, 게시물을 볼 수 있습니다.”라고 되어 있음. 해당 밴드의 멤버 수는 2019. 12. 11. 기준 2,613명임.
(영화 ‘애드 아스트라 (2019)’ 관련 자료를 제시하면서)안전번호 제2019-164433호는 2019. 9. 19. 개봉한 브라질, 미국 영화를 밴드에서 제공한 사안임. 해당 밴드의 멤버 수는 2019. 12. 9. 기준 265명임.
(영화 ‘82년생 김지영 (2019)’ 관련 자료를 제시하면서)안전번호 제2019-164440호는 2019. 10. 23. 개봉한 우리나라 영화를 밴드에서 제공한 사안임. 해당 영화는 현재 상영 중(2019. 12. 16. 기준)임.
(영화 ‘신의 한 수: 귀수편 (2019)’ 관련 자료를 제시하면서)안전번호 제2019-164441호는 2019. 11. 7. 개봉한 우리나라 영화를 밴드에서 제공한 사안임. 해당 영화는 현재 상영 중(2019. 12. 16. 기준)임.
(영화 ‘나쁜 녀석들: 더 무비 (2019)’ 관련 자료를 제시하면서)안전번호

호 제2019-164447호는 2019. 9. 11. 개봉한 우리나라 영화를 밴드에서 제공한 사안임. 해당 밴드는 과거 공개 밴드였으나 현재 밴드 소개에는 “밴드와 게시글이 공개되지 않습니다. 초대를 통해서만 가입할 수 있습니다.”라고 되어 있음. 참고로 공개형 밴드로 운영되고 있다가 폐쇄형으로 전환된 밴드의 경우 2019. 12. 개최된 전체심의위원회는 이미 회원으로 가입된 모니터링 직원이 모니터링을 계속하였다고 하더라도 운영자나 가입자들의 통신의 비밀을 침해하거나 언론의 자유를 부당하게 제한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시정을 권고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의결하였음.

(영화 ‘애드 아스트라 (2019)’ 관련 자료를 제시하면서)안건번호 제 2019-164694호는 2019. 9. 19. 개봉한 브라질, 미국 영화를 웹하드에서 340캐시에 판매한 사안임.

(영화 ‘아이리시맨 (2019)’ 관련 자료를 제시하면서)안건번호 제 2019-164744호는 2019. 11. 20. 개봉한 미국 영화를 웹하드에서 310캐시에 판매한 사안임. 해당 영화는 청소년 관람 불가이고, 현재 상영중(2019. 12. 16. 기준)임.

(방송 ‘유 퀴즈 온 더 블럭’ 관련 자료를 제시하면서)안건번호 제 2019-164870호는 우리나라 예능을 웹하드에서 110포인트에 판매한 사안임. 해당 영상물은 tvN 채널에서 2019. 4. 16.부터 2019. 12. 3.까지 화요일 오후 11시에 방영했던 ‘유 퀴즈 온 더 블럭 시즌 2’임. 안건번호 제2019-164870호의 채증 일자는 2019. 11. 20.이나 시스템 등록 일자는 2019. 12. 10.임.

(방송 ‘레버리지 : 사기조작단(2019)’ 관련 자료를 제시하면서)안건번호 제2019-164989호는 TV조선 채널에서 2019. 10. 13.부터 2019. 12. 8.까지 방영한 16부작 드라마를 웹하드에서 60포인트에 판매한 사안임. 안건번호 제2019-164989호의 채증 일자는 2019. 11. 25.이나 시스템 등록 일자는 2019. 12. 10.임.

(게임 ‘플레그 테일 이노센스’ 관련 자료를 제시하면서)안건번호 제

2019-165376호는 2019. 5. 14. 출시된 최신 게임물을 웹하드에서 790 포인트에 판매한 사안임. 정품은 약 49,800원에 판매 중이며 배급사는 포커스 홈 인터랙티브임. 해당 게임물은 청소년 이용 불가임.

(영화 '카센타 (2019)' 관련 자료를 제시하면서)안건번호 제 2019-165874호는 2019. 11. 27. 개봉한 우리나라 최신 영화를 웹하드에서 156포인트에 판매한 사안임.

(음악 'HIP (가수: 마마무(Mamamoo))' 관련 자료를 제시하면서)안건번호 제2019-165435호의 음원파일은 2019. 11. 14. 발매된 최신곡으로 앨범 'reality in BLACK'에 수록되어 있음. 해당 저작물의 실연자 중 한 명인 화사가 작사 및 작곡을 하였음. 해당 파일을 다운로드 하면 약 100개의 최신 인기곡을 이용할 수 있음. 해당 음악저작물은 웹하드에서 44 포인트에 판매되고 있음.

(영화 '허슬러 (2019)' 관련 자료를 제시하면서)안건번호 제 2019-165892호는 2019. 11. 27. 개봉한 미국 영화를 웹하드에서 178포인트에 판매한 사안임. 해당 영화는 현재 상영 중(2019. 12. 16. 기준)임.

- 최승수 분과위원장 : 전문위원의 안전 설명을 바탕으로 위원들에게 안전번호 제2019-164287호~165731호, 제2019-165746호~166106호, 제 2019-166114호~166408호에 대한 의견을 구함.
- B 위원 : 모두 데드카피 불법 전송 사안이며, 심의일 현재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사안에 대해서는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 조치만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됨.
- C 위원 : 모두 불법 복제된 음악, 만화, 출판, 영상물, 프로그램, 게임물을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공중의 이용에 제공한 사안으로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작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판단되어 가결 의견임.

- A 위원 : 시정권고하는 의견에 동의함.
- 최승수 분과위원장 : 만장일치로 안전번호 제2019-164287호~165731호, 제2019-165746호~166106호, 제2019-166114호~166408호 게시물에 대해서는 삭제 또는 전송중단과 경고의 시정조치 권고를 하되,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으로 의결함.

(경고, 삭제 또는 전송중단 시정권고 심의는 아래와 같이 의결함)

“만장일치로 안전번호 제2019-164271호~164286호는 게시물에 대해 삭제 또는 전송중단과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를 부결함. 안전번호 제2019-165732호~165745호는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을 권고하는 것으로 가결함. 그 밖에 안전번호 제2019-166107호~166113호, 제2019-164287호~165731호, 제2019-165746호~166106호, 제2019-166114호~166408호는 불법복제물등의 삭제 또는 전송중단과 그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를 하되,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으로 의결함.”

4. 폐회 선언

- o 최승수 분과위원장이 제291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폐회를 선언함.

2019년 제291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회의록이
상기와 다름없음을 확인합니다.

2019. 12. 24.

분과위원장 최승수

위원 박성호

위원 박재화